

## 2024년도 제2회 공무원 근로자(시설관리사)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는 공무원 근로자(시설관리사)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5월 20일

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

### 1.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| 채용분야       |               | 인원 | 담당직무  | 근무예정지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공무원<br>근로자 | 시설관리사<br>(기계) | 1명 | ○ 청사 시설관리(건축기계설비)<br>-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, 작업 등<br>○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| 인천지방검찰청<br>부천지청 |

### 2. 근거법령

- 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(결격사유)
- 나.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(대검찰청예규 제1248호)
- 다. 대검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(대검찰청 훈령 제297호)

### 3. 응시자격(판단기준일 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)

#### □ 기본 요건(필수 요건)

- 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## 결격사유

### <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 <검찰청법 제50조(검찰청 직원의 보직) 제3항>

제50조(검찰청 직원의 보직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### <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)>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제1항에 의거,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나.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)

다. 응시연령 : 18세 이상인 자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라. 대검찰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3조에 따른 정년(만 60세)에 해당하지 않은 자

마.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□ 자격 요건(필수 요건)-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

- 에너지관리, 공조냉동기계, 배관, 용접, 건축설비, 기계정비, 소방, 가스(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수료자 포함), 승강기, 전기 등 기능사 이상

☞ 위 각 항목 (기본요건, 자격요건)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

**4. 우대사항(서류전형만 적용)**

-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(연차별 차등배점)
  -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(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요망)
  - ※ 직무관련 분야 : 공공기관, 기업체 등 기계 시설관리 관련 업무
- 직무·전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
  - 위 ‘자격요건(필수요건)’ 자격증을 제외하고, 추가 보유한 자격증

| 채용분야              | 직무 관련(항목별·등급별 차등배점)  | 전산 관련(항목별 차등배점)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공무직근로자<br>(시설관리사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내건축 기능사 이상</li> <li>○ 건축도장 기능사 이상</li> <li>○ 조경기능사 이상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처리기능사 이상</li> <li>○ 사무자동화 산업기사</li> <li>○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(종전1급)</li> <li>○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</li> </ul> |

※ 동일 종목 여러 분야의 자격증 제출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(예시. 조경 기능사, 조경산업기사 제출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)

-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
  -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때,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저소득층,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

### 【 저소득층 】

- ▶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2호.제10호에 다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
- ▶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### 【 취업지원대상자 】

- ▶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
- ▶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
- ▶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
- ▶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
- ▶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
- ▶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

### [응시자 유의사항]

- ‘자격증’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
  -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(우대사항 등)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
  -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
  - 경력증명서에 발급기관, 근무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, 주00시간 근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  - 경력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
 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,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(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반드시 제출)
- ※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,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

## 5. 시험방법

### 가.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(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준용)

-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,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, 채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,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(소극적 전형)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

## 결정 가능 (적극적 전형)

### 【 서류전형기준 】

-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 계획서, 해당분야 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을 평가,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※ 응시자가 6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, 7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선발 예정

## 나.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(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준용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위원이 면접을 통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“상(우수)”, “중(보통)”, “하(미흡)”로 평정
-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 지참

### 【 평정요소 】

-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공무원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| ④ 예의.품행 및 성실성  |
| ⑤ 창의력.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               |

- 면접방식 : 개별면접

## 다. 최종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, ‘상’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자 순임)

### 【 불합격 기준 】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‘하(미흡)’로 평정
-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(미흡)’로 평정

-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 6. 보수 수준

| 채용 분야     | 봉급액(기본급)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관리사(기계) | 2,005,880원 (2023년 기준, 2024년 미정) |

※ 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

※ 정액급식비(140,000원), 선임수당(50,000원), 초과 근무수당, 가족수당, 위험수당, 명절 상여금, 복지포인트 등 별도

- 초과근무는 월 만근 시 700,000원 이상 수당(야간, 연장 등) 발생

## 7. 근무조건

○ 채용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

○ 수습기간 :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

※ 수습기간 중,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○ 근무시간

| 채용 분야         | 근무 시간  |
|---------------|--|
| 시설관리사<br>(기계) |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 5일(주 40시간) 근무<br>※ 필요 시 연장, 야간, 휴일근로 수행(수당지급) |

○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

## 8. 제출서류

○ 작성목록 총괄표 1부

○ 응시원서 1부

○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

※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○ 직무수행 계획서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(반드시 자필 기재)
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반드시 자필 기재)
- 주민등록초본 1부
  - ※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
  - ※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
  - ※ 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급
- 직무·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  - ※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,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
-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  - ※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(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)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,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
  - ※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
  - ※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(가입이력,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, 사업자 명칭 변경 내역 포함)으로 대체 가능
-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1부
  - ☞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

## 9. 응시원서 접수처

### 가. 접수기간

- 2024. 5. 22.(수) ~ 2024. 5. 29.(수) (우편 소인분 기준)

### 나. 접수처

-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총무과 총무팀 212호
  - ※ (우 14602)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총무과 (212호)

### 다.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접수

-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(12:00~13:00제외)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,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
- ※ 인터넷 및 택배 접수는 불가
- ※ 응시표는 별도로 송부하지 않으며,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, 응시자에게 응시번호 문자 발송 예정
- ※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'공무직근로자(시설관리사) 응시원서 재중' 기재

## 10. 시험일정

| 공고기간                     | 원서 접수기간                  | 서류전형     | 서류전형<br>합격자발표 | 면접시험      | 최종합격자 발표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5. 20.(월)<br>~ 5. 29.(수) | 5. 22.(수)<br>~ 5. 29.(수) | 6. 4.(화) | 6. 5.(수)      | 6. 11.(화) | 6. 12.(수) |

- ※ 청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·장소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홈페이지([www.spo.go.kr/bucheon](http://www.spo.go.kr/bucheon)) '알림소식 > 고시·공고' 에 게시

## 11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


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이 적용됩니다.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안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임용시험령,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
-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총무과 채용담당 <☎ 032-320-4543>